

회의자료 94-11

국민연금 농어촌 확대방안  
공청회



한국보건사회연구원

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

**국민연금 농어촌 확대방안 공청회**

- 일시: 1994. 5.24(화) 14:00-18:00
- 장소: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
- 발표자: 정경배 (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)
- 참석자: 사회 민재성(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)  
지정토론자: 김상균(서울대 교수)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안인찬(충북대 교수)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신수식(고려대 교수)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유광호(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)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정명채(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)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박덕영(농어민 후계자 연합회 회장)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김인식(전국농민단체협의회 총무)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홍성진(한국노총 연구위원)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고학용(조선일보 논설위원)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조강환(동아일보 논설위원)

\* 토론요지: 본 토론내용은 발표주제에 대한 반대의견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임

◆ 김상균 서울대 교수

- 연금제도는 미래지향적 입장이 중요한데, 향후의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제도를 고안할 필요가 있음.
  - 검토(수정)사항
    - 평균소득월액인 A의 계산법: 농어민, 자영자, 사업장 종사자 모두의 소득을 통합하여 평균할 것. 즉 A로 통일하고 A'를 도입하지 말 것
- $$\text{즉 } A = \frac{1}{N} \sum (I_A + I_{SE} + I_E), \quad N = \sum A_i + \sum SE_j + \sum E_k$$
- 가구대상보다는 개인단위로 적용
  - 자활보호자 제외(공적부조이며, 보험에서는 제외하여야 함)
  - 관리운영조직: 하부조직만 통합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상부조직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함.

◆ 신수식 고려대 교수

- UR 등 정치적인 면을 너무 고려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
  - 가입연령을 23세로 인상
  - 배우자(농민의 배우자)는 사업장가입자의 배우자와 다름. 즉 그들은 소득창출자임( 법에서도 사업장가입자 부인의 소득기여도 50%)
  - 납부방법: 분기납, 연납
  - 각출료 납부면제는 불가능하며, 유예로 하는 것은 가능
  - 특혜제도는 신중을 기하여야 함(재정안정에 역효과가 큼)
  - 장애, 유족연금의 자격요건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음
  - 관리운영조직으로 농협을 활용하는 방안은 어떠한가?
  - 개인연금에 비해 국민연금 농어민 확대는 홍보가 부족하고(대출혜택 등이

없으므로) 국민연금에 비해 개인연금이 우선적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참고하여야 함.

◆ 박덕영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장

- 기존 고령자(60세 이상자)에 대한 대안의 고려가 필요함.
- 연금에 앞서 농촌문제는 현재 매우 심각
  - 연간 4만명이 이농하므로 각출료의 정부재정지원이 필요함.
  - 군인, 사학, 공무원에 재정지원하고 있으므로 국토, 환경을 지키는 소득계층(농민)에게도 재정지원 필요함.
- 기존 고령자의 생계(연금)마련 필요
- 경영이양연금 관리주체는 농민을 위한 입장에서 구성할 것
  - 항상 제도는 일부의 이익집단을 위한 차원에서 결정되었음.

◆ 안인찬 충북대 교수

- 기본적으로 통합체제 찬성하며 농어민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.
- 농어촌 지역의 자영자와 농어민을 묶는 것은 문제가 있음.
  - 농어민의 소득( $Q=f(K,L)$ )은 임금근로자의 소득( $Q=f(L)$ )보다 큰 개념
  - 임금근로자는 고용자가 추가로 각출료를 지원함. 따라서 각출료(사업장)는  $f(K,L)$ 에 대한 것이라 볼 수 있음. 따라서 형평성 유지
- 국민연금제도가 개인연금에 비해 여러가지 매력이 있어야 됨
- 약간 시기가 늦더라도 실행상의 큰 착오가 없게 해야 됨.
  - 모의적용 지역확대 시행이 바람직함.

◆ 유광호 정신문화연구원 교수

- 대상연령을 65세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함.
- 가입자 저행에 대비하여 단계적으로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.

- 농어민 각출료 납부방법(매월)은 재고가 필요함. - 유예기간 분납
- 과도기적으로는 의보지부의 협조를 받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통합이 바람직함
  - 과도기적으로는 농협보다 의보조직이 바람직함
- 각출료에 대한 지원은 어려움

◆ 정명채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

- 60세이상 또는 55세 이상자 등에 별도의 경영이양장려금제도를 실시해야 함.
- 재정지원은 실시초기에는 농어민에게는 유리하나 자칫하면 도시자영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재정지원을 않는 것이 바람직함. 차라리 각출료부담 지원하는 것보다는 연금혜택을 받는 범위가 크도록 하는 것이 좋음. 즉 부담은 정확히 하고 급여를 통해서 유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.
- 재직자 노령연금(사업장)을 농어민에게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함.
  - 즉 재직자 규정을 자영자 뿐아니라 농어민에게 적용하여야 함.
- 농촌의 현노령세대도 문제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함.
- 의보조합의 조직을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보조직 개편이 필요함, 즉 의보조직이 국민들의 불만대상이 안되도록 해야 함

◆ 고훈용 조선일보 논설위원

- 실시상의 어려움: 월정 납부제의 재고 필요, 이농자 규모도 고려함.
- 연금은 당장의 혜택이 없으므로 오히려 의보보다 반발이 클 수 있음
  - 또한 각출료도 높고, 따라서 임의가입방식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볼직함.
  - 가입유인으로 각출료에 대한 정부지원 고려
- 급여/비용구조가 너무 저소득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음. 따라서 신고소득서 적게 신고할 가능성이 있음
- 18세는 미성년자이며 따라서 상향조정이 필요함
- 자연재해 시의 각출료면제는 복잡하므로 유예로 할 것
- 관리운영: 공무원 교원 등에 대한 것까지 고려해야 함.

- 국고지원: 농어민에 대해 일정한 각출료 지원 필요

◆ 조강환 동아일보 논설위원

- 형평성과 통합성이 미약함.
  - 복지, 행정, 조직 등에서 이런 개념이 중요한데 부족함.
  - 각출료를 적용문제: 3%로 시작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음.
  - 농어촌에 대한 각출료 지원 필요(공약사항)
- 의료보험조직과의 통합필요
- 소득등급의 상한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
- 가입연령도 65세 연장
- 신고소득제 도입하되 정직한 신고소득 유도하기 위한 방안 마련필요함.

◆ 김인식 농어민단체협의회 총무

- 홍성군 조사결과에 다소 의문이 있음. 즉 더욱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
- 시행전 긴중한 검토가 필요하며, 농촌유지는 국익차원에서 이해해야함.
- 현 노령계층을 혜택범위에 포함하여야 함.
- 경영장려금 도입이 필요하고 각출료 보조가 필요함(50% 보조 안되면 다른 방안을 고려해야 함.)
- 관리조직에 있어서 지금의 의보조합에 대한 불만이 심각함. 따라서 의보조합을 개혁하여 농어민 불만을 해소하고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.

◆ 홍성진 한국노총 정책위원

- 농어촌인구의 도시이동은 도시주거 문제를 악화시킴
- 통합제도인 경우 근로자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.
- 도시거주 농어민에 대한 문제해소가 필요함.
- 세대별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가입자격도 구체적 방안 필요
- 관리운영조직은 의보조직 문제해결후 활용가능함.